



전남 직업계고 현장실습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21. 12. 6.(월) 14:00 ~ 16:00

전라남도립도서관 1세미나실



공동
주최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전남 직업계고 현장실습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프로그램

○ 좌장: **문길주** 센터장(전남노동권익센터)

시간	내 용
14:00~14:10	〈개회 및 인사 말씀〉 - 문길주 센터장(전남노동권익센터) 장관호 지부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 참가자 소개
14:10~14:35 (20분)	〈발제〉 직업계고 현장실습 문제점 - 장정주 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 직업교육위원회)
14:35~14:40	휴 식
14:40~15:10 (각 7분)	〈토론1〉 송정미 대표(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토론2〉 고광진 과장(전라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토론3〉 박기철 지부장(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토론4〉 문보현 팀장(전남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
15:10~15:45	자유토론
15:50~16:00	〈정리 및 폐회〉

전남 직업계고 현장실습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문제점

장 정 주 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직업교육위원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문제점에 대하여...

장 정 주 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직업교육위원회)

1. 정권의 입맛에 따라 변해오는 직업계고 교육과정

정말 많이도 변해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직업계고는 항상 시험의 대상이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이승만 정권. 1인 1 기술을 익히자는 기치 아래 실업교육 지원 행정기구를 설치하고 실업 교사를 양성해 내는 과정을 거쳐 상업계 중심의 실업교육이 주를 이루는 시대였다. 1970년대 박정희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들어오면서 정부는 중화학공업을 중시하게 되었다. 직업계고도 마찬가지로. 부산기계공고를 필두로 전국에 많은 공업계열고등학교가 생겨나고 일반계와 실업계를 3:7로 하는 실업교육 강화정책이 지속된다.

1980년대 산업기술의 발달 속도가 빨라지고 산업체의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산업 현장에 필요한 특정한 기능은 취업한 후에 기업 자체 교육훈련을 통해 익히게 된다. 이에 실업 계열의 목표는 전인교육이 되었고 일반교육 강화와 필수 기초기능 습득에 주를 두게 된다. 하지만 노동집약적 제조업은 인력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게 되고 더욱 실업 계열 학교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또한 이때 공업과 농업 분야에 공동실습소 개념을 들여오면서 높은 수준의 기능실습이 한곳으로 모이게 된다.

1988년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학의 선호도가 계속 커짐에 따라 대학진학 비율조절을 위해 인문계열에 직업교육을 설치하게 된다. 직업계고등학교는 기초기능보다는 다시금 전문기능교육을 강화하고 전문직업인을 배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경제 5개년 계획이 발표된다. 인력 개발 강화 차원에서 직업기술 교육체제의 대폭적인 개편을 단행하고자 공업계 고등학교의 수요능력을 확충하고 산업체를 기반으로 하는 인력양성 형태의 산업 현장 훈련이 제도화된다. 법적으로도 지금 현장실습의 기초가 되는 「교육기본법」 제21조(직업교육) 규정, 직업교육 3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자격기본법」, 「한국직업능력 개발원법」 등이 제정되게 되었다.

김대중 정부의 고교직업교육체제는 정보화시대에 맞는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전환과 전문대학과의 연계체제이다. 고교 교육체제는 일반계열 고교를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노태우 정부에서 추구한 실업계고 교육을 전문 직업교육 과정 중심의 중국 교육에서 기초 및 일반 직업능력 중심의 계속 교육 모형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2000년도부터 상업계열 중심으로 진학과 취업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는 ‘통합형 고교’의 도입을 추진하며, 사회적 수요가 없는 실업계고등학교의 일반계 또는 통합형 학교로의 전환을 허용한다.

노무현 정부. 전문계고등학교는 기초기능교육으로 체질 개선하기 위한 ‘회계 원리’, ‘기초제도’, ‘공업입문’, ‘농업기초기술’ 등 노동 환경에서 전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교육내용을 전문계고등학교에 편성하여 가르쳤고, 그에 비해 당시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분야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전문기능인력을 양성(소수 학생 대상으로 특정한 분야의 직업기술)으로 하는 정책 방향을 가진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직업계고등학교 서열화 체계로서 마이스터고등학교 도입과 함께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기초직업인 양성을 위한 보편적 직업교육을 하였던 전문계고등학교를 지금과 같은 형태의 취업 교육을 중심에 두고 운영하는 특성화고

등학교로 개편한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취업률을 강조하는 시대였으며 청년고용 촉진을 통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고졸 취업 정책을 핵심으로 두고 유독 각 직업계고 학교에 취업률을 중시시켰던 시기였다.

박근혜 정부도 크게 다르진 않았다. 능력 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운영, 일·학습병행제(도제학교)를 통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 등을 들여오며 현실에 맞지 않는 학교 교육과정을 개편시켰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다양성과 개별화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NCS라는 국가 수준의 직무표준을 통일성 있게 학생들에게 가르치라고 한다.

그리고 또 정권이 변했다. 문재인 정부는 무분별한 대학진학을 막고 고졸 취업자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선취업 후 진학 제도를 강조한다. 유은혜 장관은 2009년 1월 25일 ‘고졸 취업활성화방안’을 내놓았다. 거기에는 공무원 채용 및 공공기관 의무할당제를 늘린다는 내용과 더불어 산학겸임교사의 단독수업제와 한시적 전문가 단기연수를 통해 교사로 임용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있었다. 그리고 NCS 교육과정은 그대로 유지한 채 고교학점제를 직업계고에 우선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 현장실습 제도의 변천사

- ▷ 1963년 산업교육진흥법 제정 : 현장실습의 포괄적인 개념인 산학협동을 규정함.
- ▷ 1973년 산업교육진흥법 개정 : 유신독재 박정희가 모든 실업계고 학생들에게 현장실습을 의무 적용함.
- ▷ 1997년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정 : ‘산업교육진흥법’을 대체한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은 동시행령을 중심으로 제 규정들이 제시됨. 이후 인력난에 허덕이던 3D 업체에 ‘2+1 제도’(학교 2년+현장실습 1년) 등을 통해 현장실습 학생들을 투입하였음.
- ▷ 2006년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 노무현 정부는 2005년 발생한 여수 현장실습 학생 엘리베이터 추락 사망 사고를 계기로 3학년 2학기 수업을 2/3 이상(11월 중순) 이수하고 졸업 뒤 취업이 보장돼야만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하여 현장실습이 사실상 폐지되었고 직업계고 교육이 정상화됨.
- ▷ 2008년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 : 이명박 정부가 현장실습 제한 사항을 풀며 현장실습과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는 과거로 되돌아감. 취업률 목표 60% 제시하며 미달 때 특성화고 지정 취소 압박, 취업률에 따른 교부금, 지원금 차등 지급.

- ▷ 2013년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 : 박근혜 정부는 3학년 1학기에도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함.
- ▷ 2014년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 도입 : 도제학교는 2학년부터 실제적인 현장실습을 나가도록 함.
- ▷ 2017년 12월 1일 ‘조기 취업 현장실습 폐지’ 선언 : 제주 J-크리에이션 생수 공장 현장실습 학생 고 이민호 군 사망 사고의 들끓는 여론에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조기 취업 현장실습 폐지’ 선언을 함.
- ▷ 2018년 2월 학습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 : 시·도교육청이 인정한 선도기업에만 수업일수 2/3 경과 후 취업 연계한 현장실습만 가능하게 함.
- ▷ 2019년 1월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일부 학생과 교사들의 의견을 핑계로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5인 미만 영세 업체도 갈 수 있고 시도교육청의 승인조차 필요 없는 ‘참여형 기업’을 통해 현장실습 파견의 제한을 크게 완화 하여 ‘학습형 현장실습’ 업체의 질이 크게 하락함.

2003년 ‘현장실습 운영 개선방안’이 발표되었다. 이때까지 교육의 가장자리에 있던 직업계고등학교 문제에 교육부가 처음 관심을 보인다. 그나마 다행일까? 아니면 지금까지 엉킨 실타래의 출발점이었을까? 교육부는 학교가 교육과 노동이라는 협곡을 아슬하게 비행하도록 만들었다. 2005년 현장 실습생의 인권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지적에 교육부는 2006년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다. 과거와 다른 지점은 ‘3학년 2학기 수업일수 2/3지점 이후 현장실습을 실시’라는 정책발표다. 그해 1년은 학교가 혼란스러웠다. 2003년에 현장실습 운영에 기본 골격은 계속 유지된다. 하지만 실습 기간 단축이라는 점 때문에 학생들의 반발이

켰고 담임이 감당해야 했다.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하나의 목표는 달성하는 것으로 보였다. 2년 차부터 학교 교육은 정상궤도에서 수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2006년에 제시된 현장실습 기간 단축 조치를 학교 자율화 정책으로 폐기한다.

현장실습 업체에 참여 조건 완화와 현장실습 기간의 장기화는 또다시 기록하지 못한 현장 실습생들의 사망 사고로 이어졌다. 2012년에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대책’ 근로계약서 체결 지도강화를 강조한다. 교육부는 권장하던 실습생 보호 조치를 의무로 변경한다. 하지만 또 사고가 났다. 2013년 ‘학생 안전과 학습중심의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다. 그런데도 2014년 1월, 2월에 연이어서 현장 실습생의 사망 사건이 이어진다.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을 통해서 현장실습의 안전을 담보하려고 한다. 또다시 2017년의 참혹한 사건들이 연속된다. 2017년 8월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방안’의 기본 골자는 조기 취업에서 학습중심으로 취업 준비과정으로 현장실습 체제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 구체적으로 집행된 정책은 2018년 2월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안정적 정착 방안’이었다. 핵심은 한 명의 학생이 기업에서 3개월은 학습 현장실습이라는 형태로 운영하고 3개월은 조기 취업 현장실습을 하는 것으로 현장실습은 총 6개월이다.

안전에 대한 담보는 교육 당국이 인정한 ‘선도기업’ 중심으로 진행하여 업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이다. 그것도 오래가지 못한다. 2019년 1월 발표는 선도기업 중심으로 하니 현장실습 업체 수가 줄어서 학생의 실습 기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정한 안전이 점검된 선도기업이 아닌 규제가 없는 ‘참여 기업’에도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하는 조치를 한다.

현장실습 일부 구간에서 교육부가 노동자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를 한다. 이 학습 현장실습 기간에 받는 수당이 최저임금 위반 논란에 하나이다. 3개월 이내 학습 현장실습 기간은 70% 임금노동, 30% 학습이라는 설계한다. 이를 기초하여 교육부는 임금의 70%를 수당으로 지급으로 명시한다. 30% 학습에 대한 보상은 현장실습 지원금 '후지급 임금'형식으로 준다. 지급 당장 내 통장에 월급이 찍히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다. 교육부의 정책은 탁상공론이다. 현장은 학습하지 않고 임금 노동을 한다. 기업이 당연하게 부담해야 할 노동자 임금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그것도 법률 위반을 하면서 말이다.

3. 현장실습 잔혹사

- 2011년 이후 언론에 보도된 사고를 중심으로.

- ▷ 2011년 12.18. 광주 기아자동차 공장 현장 실습생 전남 영광실고 김 모 학생 뇌사 사고 : 대기업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전반기는 전문대 현장 실습생, 후반기는 공고 현장 실습생을 6개월씩 교대로 몇백 명씩 이용하다 유발한 사고. 당시 김 모 군은 하루 10시간 이상 모두가 꺼리는 유해 페인트 도색작업장에서 2교대 작업을 하다 쓰러졌다.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변조해서 미성년자 불법 노동인 심야 노동, 초과 노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 ▷ 2012년 12.14. 울산 신항만공사 한라건설 협력업체 석정건설 현장실습 학생 전남 순천 효산고 홍 모 학생 작업선 전복 사고 : 전자상거래과 학생들이 건설 현장에 현장실습을 나가서 야간노동, 휴일 노동 등 연장근로시간을 초과 하였다. 폭풍우 대피 명령에도 업체에서 작업선 철수를 미루고 버티다 12명이 익사하였다.
- ▷ 2014년 02.10. 울산 금영 ETS 현장 실습생 울산 현대 공고 김 모 학생 심야 작업 중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사망함.
- ▷ 2014년 01.20. 충북 진천 CJ제일제당 육가공공장 현장실습 학생 대전 동아마이스터고 김 모 학생, 12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상급자의 폭언 등 폭력으로 회사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 2016년 5월 경기도 성남의 T 외식업체 조리부의 군포 E-비즈니스고 현장실습 졸업생 김 모 군이 장시간 업무와 선임자의 괴롭힘에 식료품 공장 앞 골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 2016년 5월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은성PSD 청년 노동자 김 모 군도 현장실습 졸업생이다.
 - ▷ 2017년 01.22. LGU+ 전주콜센터 현장실습 학생 전주의 애완동물과 여고생 홍 모 양이 욕받이 부서인 해지방어팀의 성과 압박과 업무 스트레스를 못 이겨 저수지에 몸을 던졌다.
 - ▷ 2017년 01.25. 여수산단 D 산업 협력업체 금양산업개발 현장실습 학생 여수 여양고 직업과정 정 모 군이 과중한 업무와 상급자의 폭언 등으로 자재 창고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 ▷ 2017년 11.19. 제주 J-크리에이션 생수 공장 현장실습 학생 제주산업과학고 이 모 군이 적재기에 올려 숨지는 CCTV 화면이 언론에 공개되어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도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 ▷ 2021년 10.06. 여수 신우해양레저 현장 실습생 여수해양과학고 고 흥정은운 군의 익사사고 발생. 사장 1인의 ‘참여형 기업’이고 17세 미성년자이자 현장 실습생에게 법으로 금지된 일인 배 밑바닥 따개비 제거 잠수 업무를 시켰다. 2인 1조 작업 원칙과 안전요원 배치도 무시하고, 몸에 맞지도 않는 잠수장비를 수영도 잠수도 능숙하지 못한 학생에게 입혀서 잠수 작업을 시켰다. 고인이 불편해서 물에 올라와 잠수장비를 벗다가 허리에 찬 무게 12kg의 잠수용 납덩이 무게로 인해 순식간에 물속으로 가라앉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사고였다. 전문 잠수부의 작업 비용 40만 원을 아끼려다 만 17살인 착하고 성실한 고등학생이 사라졌다.
- ※ 이 외에도 수많은 사망, 부상, 성폭력, 차별, 부당 대우 등 비통한 현장실습 사건들이 드러나지 않고 묻혀있다.

4. 현장실습 이대로 괜찮은가?

현장실습은 말 그대로 ‘실습’이어야 한다. 그러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은 실습이 아니라 노동이다. 그냥 노동도 아니고 착취적 노동이다. 직업계고에서 충분히 실습할 역량과 시간이 있는 만큼 업체에 노동자로 근로계약을 맺고 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학교는 취업률을 높이려고 조기 취업 형태의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필요했고, 기업은 값싼 인력이 필요했기에 만들어진 제도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등학교는 인력파견업소로 전락했다.

2017년 LG유플러스 고객센터 옥반이 부서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목숨을 잃은 고 홍수연 님의 사망 이후 근본적 대책에 공감했고, 그 요구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제’의 폐지를 요구했다. 계속되는 현장 실습생의 죽음에 교육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근본적 대책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조기 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기존 6개월이던 현장실습 기간을 3개월로 줄여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전환했다.

이 조치가 1년이 지나기 전인 2019년 1월 31일, 안전사고 부담 및 책무성 강화로 인한 현장실습 참여 기업이 위축된다며,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을 다시 발표한다. 기업 선정 절차인 현장실사(기업방문 횡수 줄임)를 완화하고 현장실습(집중, 학기)이란 것을 신설한다. 이로 인해 학생들이 가는 현장실습 업체의 질이 크게 하락했다. 이에 질세라 고용노동부가 「산업 현장 일 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일 학습병행지원법)을 꺼내 들더니 교육부가 동조해 2019년 8월 2일 통과시켰다. 일 학습병행지원법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값싼 인력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는 법안에 ‘학습권 보장’ 대신 ‘산업수요 적극 반영’이라는 법조문에서도 드러난다.

기업의 수요에 맞게 학생들을 졸업 전에 ‘학습근로자’로 탈바꿈시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학생이 원하면 일을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있어야 하지만 없다. 학습 근로계약의 해지 주체가 사용자라고 단정하는 23조 조항이 버젓이 있다. 이러한 법 제도 아래에서 고등학생들이 부당한 일에서 벗어나 학교에 가겠다고 말하기 쉽겠는가. 법 제정 당시 교육부 장관은 유은혜 교육부총리였다.

유 부총리가 사고 현장에 내려가 “현장 실습생 신분으로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고 자격증도 없었던 학생이 잠수 작업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것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한다. 업체는 기본적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과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했다. 18세 미만인 자의 ‘잠수 작업’을 금지하고 있고, 현장실습 담당자를 배치해야 하는 기업의 의무를 위반했고, 위험한 작업은 2인 1조로 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 과연 그의 죽음에 기업의 책임만이 있는 것일까. 졸업도 하지 않은 학생을 그곳으로 몰았던 제도와 법, 바로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제도를 건드리지 않고 죽음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5. 현장실습에 대한 교사의 생각

직업계고 교사로서 정말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

교사가 된 후 현장실습이란 명목하에 너무 많은 제자를 보내었다.

2011년 기아자동차 사고를 시작으로 매년 현장실습 학생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

2017년 고 이민호 학생의 억울한 죽음을 겪게 하더니 교육부에서는 6개월 가능한 근로 중심 현장실습에서 3개월로 줄인 학습중심 현장실습이라는 제도로 명칭만을 바꾼 채 현장실습을 유지해 왔다.

이젠 노동자가 아니라 학생 신분이라는 명목을 강조해 왔지만, 현장은 어떠한가.

교사는 살인적인 학습중심 현장실습의 업무를 감당해야 하고, 학생은 기본적인 수업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는 아직도 학생을 학생으로 보지 않는다. 그저 값싼 노동자로서만 인식할 뿐이다. 그런 기업 현장으로 학생을 보내고 그 수많은 서류를 챙겨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60% 이상은 대학을 진학한다. 학습중심 현장실습이란 그저 아르바이트의 연장선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항상 직업계고에 대한 차별의 시선은 존재했다. 00 상고생, 00 공고생, 00실고생이라는 말을 학생들은 아직도 싫어한다. NCS 교육과정으로 학교 현장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통일된 직무내용만을 강조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시스템과 맞지 않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여 고교학점제의 시범운영으로 직업계고를 실험 대상으로 본다.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면서 무분별하게 학과 개편을 진행한다. 흥정은 군 사고 역시 마찬가지이다. 상업에서 공업으로 공업에서 미용으로 미용에서 수산으로 적어도 학과 개편이란 지역의 수요와 직업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현재 여수의 대부분은 해양레저라는 이름으로 1인 요트업체나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을 이룬다. 그럼 그런 영세사업자에 구인을 위해 학과 개편을 하고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였단 말인가.

2020년 1.16. 산업안전보건법(김용균법)이 통과되었지만 한 해 2,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이런 안전하지 않은 국가에서 현장실습이란 이름으로 산업 현장으로 학생들을 내모는 것이 정상적인 교육일 리 만무하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성인들도 이렇게 죽어가는 나라이다.

정운이의 사고는 예견된 인재였다.

6. 변화되어야 하는 현장실습

가. 개선안의 방향

- 1) 어떠한 제도 개선도 현장실습 업체의 파행적 행위를 100% 막을 순 없다.
- 2) 직업계고의 학교 교육과정을 정상화해야 한다.
- 3) 고졸자 취업 현장을 포함한 전체 노동의 질을 향상해야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다.

나. 개선안의 내용

- 1) 전국의 직업계고는 3학년 2학기 11월까지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한다.
- 2) 12월은 전국 동시 가칭 '고졸 취업 준비기간'으로 정하고 취업 희망 학생들의 취업 준비 활동을 허용한다. (면접, 시험, 현장 견학 등)
- 3) 다음 해 1월은 취업 확정 학생에 대한 취업 업체의 오리엔테이션 기간으로 현장 체험, 현장 교육 등을 진행한다.
- 4) 취업 확정 학생들은 졸업 이후 취업으로 전환한다.
- 5) 노동부(교육부)는 11월까지 전국의 고졸 취업 희망 업체를 접수하고 발굴하며 현장 방문을 통해 고졸 취업 적합 업체 인증을 한다.
- 6) 노동부(교육부)는 1월 이후 고졸 취업생의 정착과 안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현장 확인을 하고 취업 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 7) 노동부(교육부)는 '고졸 취업 지원 센터'를 직속 기관으로 만들고 현행 학교에 배치된 취업지원관과 노무사를 인수하여 위 5) 항과 6) 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 기대 효과

- 1) 직업계고의 교육과정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 (3-2학기 정상 수업, NCS, 고교학점제, 성적처리 등)
- 2) 직업계고의 현장실습 및 취업 관련 업무 경감을 하고 교육과정에 충실할 수 있다.
- 3) 노동부(교육부)의 현장 방문 점검 및 인증제를 통해 고졸 취업 업체를 포함한 전체 노동 환경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 4) 고졸 취업 업체는 물론이고 산업 전반의 전체 노동 환경 개선에 영향을 끼쳐 1년에 2,500명씩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갈무리와 넋두리]

부모찬스가 없으니 대체로 가난한 제자들이다.

얼른 전문분야의 기능인이 되어 보란 듯 살고파 하는 꿈을 가진 제자들이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아름답고 정당하다는 가르침이 가슴을 뿌듯하게 채우는
것이 기쁜 제자들이다.

그러나 이 나라는, 이 정부는 우리 제자들을 달리 명명한다.

‘산업사회’의 역군으로 ‘조기 취업’해서 딱 그 정도 수준에서 행복하기를 바란다.
자신들의 공문과 지침에 ‘학습중심’을 여전히 강조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혈값에 밀어 넣기 위해 지어낸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제자 고 홍정운의 죽음에, 장관은 사과했지만, 그것은 진짜 사과가 아니다.
다시 이런 죽음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다짐과 대책은 없었고,
‘규제(안전조치 점검 등)’를 강화하면 직업계고 졸업생의 취업처가 줄어드는 안타
까운 상황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니 그 사과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막연히 기대하는 것에 불과하다.
경기의 고 김동균, 전주의 고 홍수연, 제주의 고 이민호, 여수의 고 홍정운!
우리는 또다시 다음에 불러질 ‘슬픈 이름’을 기다리고만 있을 것인가?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마다,

교복 입은 노동자들의 죽음도 다시 반복되었고,

진심 없는 사과와 실효성 없는 재발 방지 대책이 다시 현실을 모면하기 위한
연기처럼 반복된다.

‘선생’이라는 이름으로 밥벌이해야 하는 우리는 늘 비겁했다.

그래도 자격증 몇 개 따게 해서 당당히 일하는 너희들을 보며 애써 ‘잘하고 있어,
우리’라며 자위했다.

운 좋게 죽거나 다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월급이라도 타서 학교로 찾아와
인사하는 너희들을 보며 보람이라는 것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참담하고 부끄럽다. 미안하고, 미안하다.

하여, 작지만 뜨거운 목소리를 다시 내어 본다.

현장실습을 당장 중단하라!

채용과 연계된다는 당근으로 청소년 노동자들을 노예적 상황으로 몰아넣지 말아라!

모든 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산업 현장을 즉각 구현하라!

‘교육(실습)의 허울로 값싼 노동’을 강요하는 제도를 금지하라!

직업계고 학생들 모두를 ‘취업’의 틀로 밀어 넣은 폭력적 정책을 중단하라!

전남 직업계고 현장실습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토 론 문

- 토론1 | **송정미** 대표(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토론2 | **고광진** 과장(전라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토론3 | **박기철** 지부장(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토론4 | **문보현** 팀장(전남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

토론 1

현장실습 폐지와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를 위해

송정미 대표(전남청소년노동인권센터)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고 난 뒤 1963년, 박정희 정권에서 학교 교육 기저재 부족으로 직업교육 훈련을 할 수 없으니 현장(산업체, 기업)에서 필요한 직업훈련을 받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가 ‘현장실습 제도’이다. 1963년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141달러였다. 말하자면 세계 최빈국에 속해 있었다. 2021년 현재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1,000달러 정도이고 이제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한다. 국가 경제 규모도 1963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 성장의 최대 피해자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지금도 저임금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노동재해에 하루 6명씩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일 것이다.

그리고 이 노동자 안에는 일명 ‘학습근로자’라 일컫는 직업계고 3학년 ‘현장 실습생’이 있다. 너무나도 명백하게 국가는 ‘직업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직업훈련을 시킨다는 명분으로 학생들을 기업 이윤 도구의 희생양으로 삼아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1993년 김영삼 정부는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3D업종(dirtye 더럽고, difficult 어렵고, dangerous 위험한)에 현장 실습생을 인력공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충남 아산 세원테크가 공업고 실습생을 구사

대로 동원해 폭력 행사에 앞장세우기도 했다.

고등학교 3학년 현장실습생 앞에 놓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나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매뉴얼 따위는 사실 학생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법이나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교육부도 알고 교육청도 알고 고용노동부도 알고 모두 다 알고 있다. 단지 이번에 고 흥정운 학생의 사망 사건처럼 일어나지 않으면 마치 법이나 매뉴얼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되는 것이다.

현장실습생 고 흥정운 학생 사망 사건이 일어나자 교육부는 ‘현장실습 전수조사, 현장실습 실태 파악’ 등에 나서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현장실습 업체, 현장실습 실태’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 일은 그들의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평상시 점검을 하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자료 공개까지 할 의무가 있는 국가 공공기관이다. 사건이 일어나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태와 조사, 점검은 그들의 평상시 업무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런 일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늘 국가 기관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1인당 업무량은 너무 많고, 예산은 없다는 것 아닌가? 아마도 사실일 것이다. 업무는 많고 예산은 없으니 법과 매뉴얼은 단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지키고 있는 것이 된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일이다.

왜냐하면 ‘현장실습 제도가 학생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기업을 위한 제도이며, 3D업종에서 일하기에 현장실습생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2012년 정부에서 제시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기업용’을 보면 제대로 알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고졸 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움직임을 가속화하였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79%)은 고졸 수준 일자리로의 하향 취업을 초래했다. 또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인하여 핵심 기술 인력의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에 눈을 돌리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를 위한 예비 기술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한편 대기업은 생산기능직 인력과 초급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인재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장 기간의 검증을 거쳐 채용할 수 있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REDACTED]

■ 특성화고 졸업생의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현장 기술·기능인력 수급난이 심화되고 있다

구분	1990년		2010년	
	진학	취업	진학	취업
특성화고 졸업자	7.8%	79.8%	71.1%	19.2%

위의 내용을 보더라도 국가가 현장실습생을 어떻게 도구화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반면에 현장실습생에게는 실습생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실습생 준수사항 및 회사 협조사항

1. 실습생 준수사항

- ❖ 현장실습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사회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보는 학교교육의 연장이므로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 ❖ 실습기관의 모든 규정과 내규를 반드시 준수하고, 실습기간 중 실습기관에 폐를 끼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되며, 무엇인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 실습생은 장차 한 사람의 사회인,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무교육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담당자에게 예의를 갖추고 그의 지도에 순응하여야 한다.
- ❖ 실습일지는 매일 충실하게 기록하여 책임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실습이 끝난 후 현장근무 종합보고서는 성의 있게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한다.
- ❖ 실습기관을 무단이탈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는 행위 및 기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기타의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학교로 즉시 연락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위의 내용은 특성화고 현장실습 매뉴얼 기업용 177페이지 내용에서 극히 일부분에 해당 하나 국가가 왜 현장실습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그 취지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으며, 실습생 준수사항은 왜 현장실습생이 제 일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1963년 현장실습 제도가 법제화된 이후 49년이 흐른 2012년에도 여전히 대한민국은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을 기업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2012년 이후 9년이 흐른 2021년에도 대한민국의 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생은 변함없이 '을'도 '병'도 아닌 그 어디 자리에 있는 모를 저 밑바닥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힘든 밑바닥 노동을 '현장실습'이라 생각하고 참고 견디다 죽어간다.

2011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7년 그리고 2021년 직업계고 3학년

현장실습생은 자신의 전공과 전혀 맞지 않는 부서에서 일하다가 재해로 죽거나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2017년 고 이민호 학생 사망 사건으로 현장실습매뉴얼을 변경하여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정책을 바꾼다며 고등학교 3학년 학과 과정 3분의 2 수료, 현장실습 최대 3개월까지 한하는 내용으로 현장실습매뉴얼을 변경하였지만 '특성화고 취업률이 낮아졌네', '청년 실업률이 너무 높다' '문턱이 높아 현장실습 참여 기업이 없다'는 등 언론에서 떠들어내자 2019년 현장실습 기업체의 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누구나 현장실습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완전히 개방해버렸다.

현장실습에 대해 각각의 정권마다 자신의 입맛에 맞게 요렇게 저렇게 뜯었다. 고치기를 반복하면서 늘 현장실습 정책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그 성과를 과잉포장해 왔지만, 결과는 늘 반복되는 현장실습생의 죽음이었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현장실습생의 절실함을 이용하여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다는 논리, 현장실습이 취업의 우선 조건이 된다는 논리, 현장실습이 없으면 직업 계고의 의미를 어디에서 찾느냐는 직업계고의 정체성을 현장실습에서 찾는 사람들

하지만 직업계고는 일반고와 다른 그 특별함을 학생들과 함께 얼마든지 가꾸어내면서 좀 더 자유롭게 학생들의 숨은 재능을 발굴하고 학생들이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전한 학습과 실습을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 과정 안에서 만들어 낼 수 있다.

직업계고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만이 직업계고가 존속하고 지속 가능한 학교로 남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토론2

전남 직업계고 현황과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

고광진 과장(전라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 전남 직업계고 현황

◦ 학교 현황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일반고(직업과정)	계
4	40	3	47

◦ 전남 직업계고 현황은 마이스터고 4개교, 특성화고 40개교, 일반고(직업과정) 3개교를 포함하여 47개교가 있음

◦ 계열별 설치 현황 및 전문교과 교사 현황

구분	농업			공업			상업			수산			가사		
	공	사	계	공	사	계	공	사	계	공	사	계	공	사	계
설립별 학교수	9	0	9	21	4	25	13	7	20	3	0	3	5	5	10

* 학교 수는 계열별로 중복되는 학교가 있음

◦ 직업계고 계열별 설치 현황으로는 농업계열 설치학교 9개교, 공업계열 25개교, 상업계열 20개교, 수산계열 3개교, 가사계열 10개교로 공업계열 설치 학교가 전남 직업계고 중 53%를 차지하고 있음

□ 전남 마이스터고 현황

학교명	개교연도	분야	설치학과	비고
한국항만물류고	2010	항만물류	물류장비기술과 물류시스템운영과	
전남생명과학고	2013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경영과 친환경축산경영과 친환경원예경영과	
여수석유화학고	2013	석유화학	공정운전과 공정설비과 공정계전과	
완도수산고	2014	수산가공	수산자원양식과 수산식품가공과 어선운항관리과	

- 전남 마이스터고는 4개교로 향만물류, 친환경농업, 석유화학, 수산가공의 영 마이스터 육성을 목표로 교육활동을 하고 있음

□ 직업계고 계열별 학생 및 전문교과 교사 현황

구 분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	수산계	가사계	총계
학교수	9	25	20	3	10	67
학급수	74(90)	309(326)	163(177)	26(29)	86(87)	658(709)
학생수	1,140 (1,220)	5,490 (5,602)	2,830 (2,877)	417 (432)	1,744 (1,752)	11,621 (11,883)
학생 비율(%)	9.81	47.24	24.35	3.59	15.01	100
전문교과 교사수	110	383	160	26	65	744

- 학교 수는 계열별로 중복되는 학교가 있음, 학생 수는 종합고의 보통과 제외 - ()는 특수학급 및 특수학생 수 포함
- 전남 전체 고등학교 수는 144개이고 직업계고 학교 수는 47개로 32.6%를 차지하고 있고, 고교 학생 수는 46,877명, 직업계고 전체 학생 수는 11,883명으로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의 25.3%를 차지하고 있음
- 전문교과 교사 수는 744명으로 전남 전체 교사 수 19,996명 중 3.7%를 차지함

□ 전남 직업계고 현장실습 현황

학년도	졸업자 수	참여자	참여율(%)
2016	5,813	4,641	79.8
2017	5,585	3,559	63.7
2018	5,476	1,421	25.9
2019	4,899	1,791	36.5
2020	4,237	1,673	39.4

□ 졸업 후 취업 현황

학년도	농업계열		공업계열		상업계열		수업계열		가사계열		계	
	취업(%)	진학(%)										
2018	65.3	36.5	47.3	52.7	43.1	56.9	71.5	28.5	68.4	31.6	49.4	50.6
2019	64.3	30.1	52.0	38.4	45.8	43.6	71.7	22.7	68.6	13.7	53.5	38.0
2020	39.3	37.4	40.9	41.5	39.0	44.1	54.6	25.2	66.9	44.2	43.1	41.5

※ 취업률과 진학률의 합이 100%를 초과한 사유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임

- 졸업 후 취업률은 2018학년도 49.4%, 2019년도는 53.5%, 2020년도는 43.1%로 취업과 진학이 50% 정도씩 이루어지고 있음

□ 전남교육청 후속 조치

- 근로감독 요청: 여수지방고용노동지청(10.8.)
- 현장실습 긴급 점검: 323개 현장실습 기업(10.20.~11.12.)
-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고 재발 방지 대책추진단 구성·운영(10.12.)
- 교육부·전라남도교육청 공동조사단 구성 및 조사(10.13.~10.14.)
- 가족이나 학교 친구들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지원(10.13.~)
- 직업계고 취업 부장 대상 협의회(10.14.)
- 현장실습 사고 재발 방지 대책추진단(1차) 협의회(10.19.)
- 현장실습 제도 개선 의견수렴 47개 직업계고(10.19.)
- 전남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예정 업체 긴급 중단조치(10.20.~11.6.)
 - 현장실습 기업 전수조사 및 직업계고 현장실습 특별점검
-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목포지청 방문(10.21.)
 - 부교육감, 미래인재과장 현장실습 업체 점검 요청
- 현장실습 부당신고센터 운영(취업지원센터, 10.25.~)
- 현장실습 의견 게시판 운영(전남교육청 홈페이지, 10.25~)

□ 전남교육청 의견수렴

-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고재발방지 대책추진단 1차 협의회 (10.19.)
 -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관계자, 도청, 노동인권 관련 시민단체, 전교조, 직업계고 교장, 취업 부장 등 위원 20명
-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위한 직업계고 공동체 의견수렴
 - 47개 직업계고: ~10.20. - 직업계고 학교장: ~ 11.12.
 - 직업계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11.19.[도교육청 홈페이지]
- 현장실습기업 긴급 점검(10.12.~11.5.)
 - 대상: 323개 현장실습 기업
 - 교육감, 교육국장, 미래인재과장, 장학관 외
 - 현장실습안전점검지원단(노무사, 청렴시민감사관, 학교 담당자 등)
- 현장실습 관련 (직업계고 47교) 긴급 점검 및 컨설팅(10.20.~11.5.)
- 여수YMCA 토론회 참석(11.4.)
 - 주제: 여수 직업계고의 학교 교육 정상화와 현장실습제도 개선 대안
 - 도교육청(교육국장, 미래인재과장, 장학관, 장학사), 여수대책위 공동대표, 여수YMCA 관계자, 전교조, 특성화고 재학생, 도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등
 - 내용: 안전한 학습중심 현장실습을 위한 개선안 마련 촉구
- 현장실습점검 지원단(청렴시민감사관) 점검 후 협의회(11.5.)
- 청소년노동인권센터 공개토론회 참석 예정(11.23.)
- 전국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안 교육부 제출(12.10.)
- 시·도교육감협의회 의제 채택을 통한 현장실습개선 제안

□ 현장실습 개선방안

- 학생들의 삶과 건강한 노동이 균형 잡힌 기능인으로 성장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진로 직업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지원과 노력이 필요
- 직업계고 교육과정 정상 운영을 통해 전공 교과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졸 취업 희망 학생의 '산업안전'과 '노동인권 보장' 강화가 필요

[장기적 과제]

□ 직업계고 교육과정 정상화 필요

- 학습권 확보를 위한 고3 교육과정의 이수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통한 미래의 건강한 직업인 육성
- 現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교육과정 이수 후 예비 기능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 조성 후 제도보완을 거쳐 장기적으로 '폐지'하는 방향
- 낮은 임금의 청소년 노동력 착취라는 기업의식의 개선 필요
-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 기능인이 졸업 후 양질의 취업을 할 수 있는 구조적 뒷받침 필요

□ 국가적인 차원의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제도 개선 법률적 토대 구축

- 직업계고는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취업으로 연결하는 현장실습은 졸업 후 채용할 기업에서 사전 교육하며 그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법적 토대 마련 필요

□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는 재학생(1~2학년)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장기적으로 단계적인 방안 마련 필요

[단기적 과제]

□ 교육과정 정상화할 수 있는 3학년 2학기 수업일수 2/3 경과 후(또는 12월) 현장실습 방안

- 장점
 - 졸업 전 현장실습 후 취업 가능 시기 확보 가능
 - 3학년 2학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시간 확보로 숙련 기술인 양성
 - 학생, 학부모, 기업체 관계자의 실질적인 학습중심 현장실습 가능
- 문제점
 - 기업에서 채용 전 사전 교육 부담으로 참여 저조
 - 현장실습 가능 기업이 감소하여 학생들의 참여가 어려움
 - 공기업, 공무원 등 3학년 2학기 중 가능한 경우 형평성 논란 발생

□ 참여 기업 제외하고 선도기업만 안전한 현장실습 방안

- 장점
 - 비교적 안전한 현장실습 기업 확보, 제공
 - 채용약정형 산업체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 전환
- 문제점
 - 현장실습 가능 기업이 감소로 소수의 학생만 진행

□ 사무직, 미용, 요리 등 비교적 안전한 참여 기업만 현장실습 실시 방안

- 장점
 - 비교적 안전한 업종에 대해서만 현장실습 운영
- 문제점
 - 업종별 현장실습 실시로 형평성 논란 우려

□ 결론 및 제언

-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낮은 임금의 청소년 노동력 착취라는 기업과 사회의식 개선 필요하다.
-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 기능인이 졸업 후 양질의 취업을 통해 지역 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구조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국가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자체와 지역산업체, 유관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소중한 우리 청소년들이 자리매김 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토론3

현장실습 폐지하고 실질적인 취업연계 방안마련돼야

박기철 지부장(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

□ 현장실습 문제의 근본적 문제 접근이 없다.

지난 10월 6일 여수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직업계고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뒤늦게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교육청과 함께 공동조사단을 구성하면서 사후약방문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전남교육청은 현장실습 전수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이처럼 모든 현장실습 사고는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을 마주한 뒤에야 이루어져 왔다.

또한, 10월 12일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도 법령을 제대로 지켰는지, 교육부의 지침대로 이행했는지, 기업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해 질의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을 지키고 지침대로 이행했다고 해서 현장실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중대 재해기업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학생·청소년을 현장실습이라는 합법적 제도라는 기업체로 내모는 한 사고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현장실습 문제를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장실습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직업계고 학생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사회는 머리를 숙여 왔다. 대기업 통신회사에서, 생수 공장에서, 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다 죽음으로 내몰린 학생들을 애도하거나 사과하거나 분노해 왔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재발 방지 대책은 책임회피를 위한 임시방편일 뿐이었다.

2017년 제주 생산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학생의 사망 사고 대책으로 교육부는 현장실습 업체 선정 기준을 강화한 ‘선도기업’에만 현장실습을 허용했다가 1년 만에 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선도기업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도 ‘참여 기업’으로 현장실습을 허용함으로써 기준을 완화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방안’은 학생의 안전보다 학교의 취업률, 기업에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처럼 노동자가 필요한 기업과 학생들의 경제적 조건이 맞아떨어져 괴물 도제학교 시스템이 운영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심지어 전공과도 무관한 일에 값싼 노동력 충원의 방편으로 악용되어 온 현장실습, 직업계고의 설립 목적을 교육 현장이 아닌 기업에서 메꿔왔던 수십 년의 관행을 바꾸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안타까운 희생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현장실습 폐지를 위한 국가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장실습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은 말 잔치일 뿐이다. 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해 도구화되고 있는 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정상화하여 학령기 학생들의 기본권과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한다.

취업에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로 ‘현장실습이라도 해야 한다.’라는 직업계고 학생

들을 희망 고문하지 말고 차원이 다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직업계고 설립 목적에 맞는 취업 보장 방안을 교육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 국회 등 국가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

둘째,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이 아닌 '교육실습장'에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육 받고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대학, 기업도 동참해야 한다. 구색 갖추기로 끼워 넣은 형식적 교육과정이 아닌, 노동의 가치와 권리부터 실무 역량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된 직업계고 교육과정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초등학교부터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고 노동이 존중되는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것을 포함하여 실질적 대안을 제시와 함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상식이 보장되고,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강구되어야 한다.

□ 마무리

오늘 토론회가 사망 사고 이후 진행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도제학교 현장실습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기계적인 현장실습의 적용과 학생의 노동권 보장 현실을 문제를 정확히 하였으면 한다.

이 시간을 빌려 다시 한번 고 흥정운 님을 지키지 못한 방조자로서 깊이 사죄드리며 다시는 이런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를 바꾸는 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토론4

현장실습, 현실적인 개선방향은

문보현 팀장(전남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

□ 들어가며

- 2006년 직업계고 현장실습 정상화 방안 이후, 2012, 2013년의 제도대 책, 2016년 직업훈련촉진법(직촉법) 개정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 제도는 개선되는 듯 보임.
- 제도적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음 (1) 조기 취업과 현장실습 구분이 안 됨(교육 권, 학습권). (2) 실습생의 권리(인권), 안전에 대한 보호(건강권)부족, (3) 현장 실습과 교육과정의 미연계, 파행운영(직촉법과 교육과정의 불일치)
 - 국가인권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토론회(2017.6.13), 발제자:이수정(현장실습 현황과 문제점), 이종희(현장실습의 법률적 문제와 과제)에게서 도 발제와 같은 내용이 언급, 문제점이 지적됐음

□ 현장실습의 유형들

- (1) 교육형 실습형: 전공 적합성, 기능, 발전 가능성 모두 큼
 - 별도의 실습 장소, 직무교육 병행, 별도 프로그램으로 운영, 실습 기간 최저임 금 수준의 수당 지급
- (2) 좋은 일 자리형: 근무조건, 매우 우수, 전공 적합성 높음
 - 상과계 병원,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 사무직으로 조기 취업 형태

- 실습 형태는 순수 노동+ 신입사원 교육, 학업 우수자 취업경로
- (3) 보통 일 자리형: 근무조건 우수~보통, 전공 적합성 낮음
- (4) 병역 특례형: 최저임금 수준, 병역의무 기간 동안
- (5) 나쁜 일 자리형: 근무조건 나쁨, 전공 적합성 높음
 - 기술공업계, 병역특례업체가 아님, 입대 전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취업, 기업 체도 유사한 사고, 영세규모, 실습 종료 후 취업 연계 잘 안 됨. 조기 실습 종료 사례가 많음
- (6) 아르바이트형: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작음, 보수는 낮지 않음

□ **현장 실습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 **직촉법(제7조) 산업체 현장실습 의무 규정 삭제**

- 직촉법과 직업능력개발, 산학협력법 등의 관련 법안의 유기적 연계가 형해화 된 채 산업체 현장실습 의무만 존재하는 경우, 무의미하며, 일반적 직업훈련 과 구별이 안됨(교육인지, 취업인지)
- 조기 취업 시기(특정) 조정, (5) 와 (6) 의 형태는 근절
- 특히 공공기관 등에서 조기 취업을 지양하는 문화확산 필요
(취업 내정제 등, 교육권 배려차원에서, 일본의 취업내정제 등 검토 필요)

• **교육형 확대 운영을 위한 지원 제도 마련 필요**

- 세계적으로 직업훈련과정에서 현장실습은 거의 필수적으로 포함
(미국의 산학협동 교육:퍼킨슨 법, 일본의 듀얼시스템)
- 대체로 2개 유형으로 분류, 도제 훈련형, (한국) 특성화고 현장실습형과 유사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나, 제도 운용은 전혀 다름(조기취업 연계의 경우,

- 노동자로 분류 임금을 받음)
 - 도제 훈련형, 교육 주체가 기업, 수습생은 노동계약에 따르는 수습계약, 도제 훈련의 3요소 OJT, 학교 교실 수업, 일 경험(학습의 하나로 봄)
 -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교육형 현장실습"의 경우 고려해야 할 점
 - OJT는 노동과 분리될 수 없음. 노동(작업, 일)에서도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인정
 - 노동(작업, 일)과 분리된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은 현실적으로 아주 극소수. 기업은 교육기관이 아님.
 - 학교 내에 실습장소를 설치하여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NCS(국가직무능력 표준)기반에 따른 실습체제로 전환도 필요.

• 학교의 역할 고민

- 학생을 사지로 내몰고 있나? 아니면 최선을 다하고 있나?
 - 외국 사례(미국, 일본 등의 산학, 듀얼시스템 등을 포함)는 우리나라 특성화 고와 같이 적극적으로 실습업체(선도기업 등등)를 찾아주고, 지정해주지는 않음(한국 사례는 매우 드뭄)
- 취업률 위주의 학교평가 및 사업평가에 대한 검토(질적지표, 전공적합성)
- 취업담당교사의 업무 경감, 수업과 기업발굴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 현장실습 제도가 근본적인 변화,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 없이 이대로 간다면 졸업생들의 향후 취업은 (5),(6)의 나쁜 일 자리형, 아르바이트형으로 내몰린 가능성 큼
- 취업지원관 제도의 현황은? 정규직인지, 아니면 비정규직인지

• 현장실습은 NCS기반에 따라 학교 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

- 현장실습에 관한 찬반 논리는 세계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며,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기관의 교육권을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있음

- 현장실습은 전문교육과정으로 포섭되어야 함

• **현장실습을 교육과 일 경험으로 볼 것인가?**

- 현장실습 제도 설계와 개선방안 마련은 “청소년 당사자 참여”가 원칙이며 필수(청소년당사자+교육기관+사회단체+기업+지방자치단체)

- 현장실습 제도 설계에는 지방자치단체(전남도)의 조례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전라남도 관련 조례〉

- 전라남도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특례(2019.4)

- 전라남도 인재 육성 지원 조례(2019.10 제정, 2020.12 일부개정)

-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2015.1 제정, 2017.9일부 개정)

- 전라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2012.7 제정, 2017.12 전부개정)

-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3.10 제정)

- 전라남도 직업교육훈련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11.12 제정)

〈참고〉

국가인권위(2017)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현장실습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자료집

[자료집\(토론회·세미나·포럼\)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2007)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보고서

[실태조사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humanrights.go.kr\)](#)

전라남도 관련 조례(본청, 일자리경제과 선택)

[자치법규정보시스템 - 자치법규 보기 \(elis.go.kr\)](#)

전남 직업계고 현장실습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자 료 집

- 자료1 | 직업교육훈련촉진법(시행령 포함)
- 자료2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자료3 | 전라남도고등학교현장실습운영 및 지원조례
- 자료4 | 전라남도 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운영지침

자료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약칭: 직업교육훈련법)

[시행 2021. 6. 24.] [법률 제17957호, 2021. 3. 23., 일부개정]

교육부(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397

고용노동부(일학습병행정책과) 044-202-7283

제1장 총칙 <개정 2011. 6. 7.>

제1조(목적) 이 법은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21. 3. 23.>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학협동”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인력·시설·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나.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다.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실시

6. “원격직업교육훈련”이란 분리된 장소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

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2. 3., 2021. 3. 23., 2021. 8. 17.>

1. “직업교육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2.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3. “직업교육훈련생”이란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받으려는 사람을 말한다.

4. “직업교육훈련교원”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훈련생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산학협동”이란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산업인력의 양성과 산업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인력·시설·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의 공동활용 및 협동연구

나. 특약에 의한 학과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설치

다. 직업교육훈련의 위탁 실시

6. “원격직업교육훈련”이란 분리된 장소에서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실시되는 직업교육훈련을 말한다.

7.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생이 향후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시행일 : 2022. 2. 18.] 제2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의 확충 및 실험실습의 실시
2.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사람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의 실시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
4. 법인으로 전환한 직업교육훈련기관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산학협동의 실시
7.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전문개정 2011. 6. 7.]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개정 2011. 6. 7.>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가는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3. 27.>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 및 그 시설·설비의 확보·개선
2.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3.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 지도
- 3의2.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4.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5.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평가

6.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자료의 개발·보급

7.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8.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

9.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주요 사항

③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8.>

④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다음 해 실천계획과 지난 해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⑥ 기본계획,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제5항에 따른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및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8.>

[전문개정 2011. 6. 7.]

제5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거나 인력·시설·설비와 직업교육훈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이 제1항에 따라 연계하여 운영하는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연계하여 운영하는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해당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려는 경우에 그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제6조(직업교육훈련의 위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직업교육훈련의 일부를 다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산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제7조(현장실습) ①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 및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3., 2018. 3. 2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2018. 3. 27., 2018. 12. 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④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8.>

[전문개정 2011. 6. 7.]

제7조의2(현장실습 운영기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하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이 참여하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실습 산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2. 3.]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2021.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3.>

③ 시·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④ 시·도교육감이 설치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8. 3. 27.]

제7조의4(취업전담교사 지정·운영) ①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지원활동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취업전담교사 배치 기준, 취업지원활동의 수업시간 인정 기준 및 범위 등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7조의5(취업지원인력 배치·운영) ① 시·도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실습 및 취업처 발굴 등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인력을 채용·배치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인력의 채용, 배치 기준 등 취업지원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제8조(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등) ①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의 장이 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해당 지역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 산업체의 장에게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① 현장실습을 받을 직업교육훈련생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사전에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3., 2017. 7. 26., 2018. 3. 27.>

② 직업교육훈련생의 보호 또는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현장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서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및 직업교육훈련생의 권리·의무, 현장실습의 내용·방법 및 기간·시간, 현장실습결과의 평가, 직업교육훈련생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6. 2. 3., 2018. 3. 27.>

[전문개정 2011. 6. 7.]

제9조의2(현장실습 시간) ①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켜서는 아

니 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9조의3(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협의하여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하여금 산업체에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필요한 현장지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 조건을 개선하고 적절한 실습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생의 인권 및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실습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②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 3. 23.>

1. 현장실습에 필요한 시설·설비의 확보
2. 산업재해의 예방 및 보상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장지도에 관한 협조
4. 현장실습산업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5. 그 밖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에 필요한 사항

③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습을 중단하는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이 소속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9조의5(현장실습 안전교육 등)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현장실습을 받는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하여 현장실습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3.]

제10조(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와 그 밖에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11. 6. 7.]

제11조(직업교육훈련생의 선발)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대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관련된 적성을 가진 사람
2.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체 근로자 또는 자격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소지자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언제 어디서나 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2조(직업교육훈련과정의 편성) 직업교육훈련과정을 편성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이 직업교육훈련생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참여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산업체의 수요에 적합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3조(직업교육훈련교원의 양성 및 연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직업교육훈련교원을 양성하고 직업교육훈련교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산업체 현장연수 등 다양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업교육훈련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하고, 직업교육훈련교원을 채용할 때 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우대하여야 한다.

③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수를 받는 경우에 연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급여상 또는 인사상의 배려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4조(직업교육훈련기관의 특성화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특성화된 직업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함으로써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국공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법인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효율적인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3장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등 <개정 2010. 3. 17.>

제16조 삭제 <2010. 3. 17.>

제17조 삭제 <2010. 3. 17.>

제18조(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시·군·자치구에는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설비 투자계획의 수립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3.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4.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 6. 7.]

제19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지역의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회장,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중소벤처기업관서의 장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직업교육훈련계·산업계·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7. 26.>

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0조(운영위원회) 직업교육훈련기관은 효율적인 직업교육훈련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산학협동의 추진 등을 위하여 산업체 및 직업교육훈련계를 대표하는 사람, 학부모, 직업교육훈련교원,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6. 7.]

제4장 교육훈련기관의 평가 및 정보의 공개 <개정 2011. 6. 7.>

제21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지원금의 운용실태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현황
3.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4.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실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의 범위 및 평가 방법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2조(평가 결과의 공개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을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와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3조(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직업교육훈련기관은 직업교육훈련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정보의 종류 및 공개 방법과 그 밖에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7.]

제24조(「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본다. <개정 2018. 3. 27.>

② 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65조, 제72조 및 제73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및 제114조제1호를 각각 준용한다. <신설 2018. 3. 27.>

[본조신설 2016. 2. 3.]

제25조(지도·점검 등) ①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현장실습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현장실습산업체에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는 등의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를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받는 자에게 미리 조사 일시, 조사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미리 알릴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26조(벌칙) 제9조의2를 위반하여 현장실습 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실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제2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실습계약 중 다음 각 목의 표준협약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현장실습산업체의 장
 - 가. 현장실습 기간
 - 나. 현장실습 방법
 - 다. 담당자 배치
 - 라. 현장실습 수당
 - 마. 안전·보건상의 조치
 - 바.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 3. 27.>

[본조신설 2016. 2. 3.]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교육부장관은 시·도교육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3. 27.]

부칙 <제18189호, 2021. 5. 1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19. 10. 8.] [대통령령 제30106호, 2019. 10. 8., 타법개정]

고용노동부(일학습병행정책과) 044-202-7273

교육부(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397

제1조(목적) 이 영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2.>

제2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2016. 8. 2.>

②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확정 예정일 9개월 전까지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2016. 8. 2.>

③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관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2016. 8. 2.>

④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2016. 8. 2., 2018. 9. 28.>

[제목개정 2016. 8. 2.]

제2조의2(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관련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 및 그 시설·설비 현황에 관한 사항
2.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3. 직업교육훈련교원의 현황 및 양성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3조(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5항 전단에 따라 소관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매년도 직업교육훈련 세부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0월 31일 까지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8. 2., 2019. 6. 18.>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조제4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천계획에 따라 시·군 및 자치구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실천계획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8. 2., 2019. 6. 18.>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거나 제출받은 실천계획과 해당 연도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8. 2., 2019. 6. 18.>

[제목개정 2016. 8. 2.]

제3조의2(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① 교육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기본계획과 실천계획 간의 연계성
2. 다음 해 실천계획 수립 내용의 적정성
3. 지난 해 추진실적의 목표 달성도

②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과 그 추진실적의 점검·평가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평가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8.]

제4조(현장실습의 이수기간 등) ①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현장실습의 이수기간은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직업교육훈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8. 2.>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해당 직업교육훈련과정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 재직 중인 사람은 해당 직업교육훈련생의 담당 업무가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내용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직업교육훈련생은 필요한 자료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

③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2016. 8. 2.>

1. 직업교육훈련기간이 3개월 이내인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2.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이하 “현장실습산업체”라 한다)가 도서벽지 등에 위치하여 현장실습을 받기 어려운 사람
3.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생의 현장실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이 곤란하여 현장실습을 받기 어려운 사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의 내용상 현장실습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사람

④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생의 동의를 얻어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제5조(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현장실습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시 발생한 안전사고의 유형별 현황 및 원인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사전교육의 실시 현황에 관한 사항
4. 현장실습 지원체계의 구축 현황에 관한 사항
5. 현장실습 만족도 및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감독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의3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지도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9조의4에 따른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9조의5에 따른 현장실습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6. 법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9. 6. 18.]

제6조(현장실습계약의 체결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9. 28.>

1.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2.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6. 8. 2.]

제7조 삭제 <2016. 8. 2.>

제8조 삭제 <2016. 8. 2.>

제9조(현장실습 소요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생, 직업교육훈련교원 또는 현장실습산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제10조(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원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우선 선발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훈련기관이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인 경우에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8. 8. 21., 1999. 2. 5., 2001. 1. 29., 2001. 7. 7., 2006. 4. 27., 2008. 2. 29., 2008. 12. 31.,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6. 8. 2., 2017. 7. 26.>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수급권자 또는 장애인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교 재학생 또는 고등학교 중퇴이하 학력자로서 교육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가족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6. 삭제 <2007. 9. 10.>

7. 「군인사법」 제46조의2에 따른 전직지원교육 대상자 중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전역 예정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8. 그 밖에 인력수급정책상 직업교육훈련의 우선 실시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거나 교육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제11조(산업체 근무경력의 인정)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장실습경력을 산업체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제12조 삭제 <2016. 8. 2.>

제13조 삭제 <2016. 8. 2.>

제14조 삭제 <2016. 8. 2.>

제15조 삭제 <2016. 8. 2.>

제16조 삭제 <2016. 8. 2.>

제17조 삭제 <2016. 8. 2.>

제18조(협회의의 통합 설치·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의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약에 따라 협의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실시기관 등)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이하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라 한다)는 그 소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장(이하 “평가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개정 2016. 8. 2.>

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직업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12. 31., 1999. 2. 5., 2001. 7. 7., 2003. 9. 19., 2005. 6. 30., 2012. 1. 25., 2016. 8. 2.>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 중 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직업교육훈련기관
- ③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의 주기는 5년의 범위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유형 및 재정지원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정한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0. 7. 12., 2013. 3. 23., 2016. 8. 2.>
1.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교육부장관
 2. 제2항제3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고용노동부장관
 3. 제2항제5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해당 평가실시기관의 장
- ④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 8. 2.>
1. 직업교육훈련시설·장비현황
 2.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3.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실태
 4. 직업교육훈련생의 진로·취업실태
 5. 직업교육훈련생 및 산업체의 만족도
 6. 산학협동의 실태
 7. 그 밖에 정보운영체제·후생복지 등 평가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⑤ 평가실시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가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6. 8. 2.>
- 제20조(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 평가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 평가 결과를 평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평가 항목별 또는 평가 영역별로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2.>

[제목개정 2016. 8. 2.]

제21조(직업교육훈련정보의 공개)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2.>

1. 학칙 또는 운영규칙
2. 입학지원현황
3. 직업교육훈련과정
4. 직업교육훈련생의 취업현황
5. 직업교육훈련교원 및 직원현황
6. 직업교육훈련시설·장비현황
7.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재정현황·설립자의 발전계획
8. 그 밖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 <개정 2016. 8. 2.>

제22조(규제의 재검토) ①교육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기간의 범위와 현장실습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및 그 절차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1., 2016. 8. 2.>

[본조신설 2014. 12. 9.]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8. 9. 28.>

1. 법 제2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경우: 교육부장관
2. 법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③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도 교육감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노동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1. 과태료 부과 대상자
2. 법 위반 내용
3.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8. 2.]

제24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2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이 참여하는 현장실습과 관련된 권한만 해당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2. 법 제27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② 법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지도·점검의 권한
2. 법 제27조제1항제2호라목 및 마목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본조신설 2018. 9. 28.]

부칙 <제30106호, 2019. 10. 8.>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자료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80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3조, 제114조제3항, 제131조, 제138조제1항, 제140조,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으로, “근로”는 “현장실습”으로, “근로자”는 “현장실습생”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31.]

부칙 <제18180호, 2021. 5.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보조·지원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5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칭: 산재보험법)

[시행 2021. 7. 27.] [법률 제17910호, 2021. 1. 26.,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산재보상정책과) 044-202-7717,7705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 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본다. <개정 2010. 6. 4.>

②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입은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0. 5. 20.>

③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장실습생에 대한 보험료의 산정·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7910호, 2021. 1.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3

전라남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 2021. 4. 8.] [전라남도조례 제5289호, 2021. 4. 8., 제정]

전라남도교육청(미래인재과), 061-260-048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현장실습 내실화로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
 -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3.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4. “산업체”란 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산업체단체 및 연구기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이란 현장실습 후 현장실습생을 그 산업체에 채용한다는 것을 산업체·학교·학생 간에 약정하는 형태의 현장실습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공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 및 발달 단계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이 안전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① 현장실습은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하여 현장 적응력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현장실습과 취업을 구분하는 실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시 산업체 선정과 실시 시기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생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인권 교육을 충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기준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 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준과 함께 현장실습에 필요한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운영기준을 수립하거나 매뉴얼을 개발하는 경우 산업체의 종류별 특징을 고려하고 이미 현장실습을 받은 현장실습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운영기준 및 매뉴얼 검토, 선도기업의 심의·선정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관련 관계 기관, 전문가, 교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 “선도기업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운영 계획) ① 학교장은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은 학교 구성원, 산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실습운영위원회) ① 학교장은 운영계획 수립 등 현장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현장실습 업무 담당부장 및 학과부장 등 교원, 학부모, 지역 산업계 및 취업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담노무사 등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운영 방법) ① 학교장은 학교와 산업체의 여건, 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다.

1.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2.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3.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4. 그 밖의 현장실습

② 학교장은 산업체의 발굴이 어렵거나 산업체 현장실습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교내 활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산업체 선정 및 선도기업 지정 등)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 및 노동인권을 보장하고 교육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산업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를 사전 방문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현장실습의 가능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습 지원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체를 선정한다.

④ 학교장은 선정된 산업체가 운영기준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육감에게 선도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라 지정 신청이 있으면 선도기업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선도기업으로 지정한다.

⑥ 교육감은 선도기업으로 지정된 산업체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전 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동인권·산업안전·직업윤리 등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산업체의 정보, 직무내용, 현장실습

제도 및 운영계획 등 현장실습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산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기관·단체에서 개발한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현장실습계약의 체결) 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및 산업체의 장과 함께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준수, 현장실습 담당자의 배치 등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산업체의 장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실습 지도·점검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장, 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문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도·감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현장실습 담당 교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학생의 안전 보장)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학생이 신속하게 치료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보험급여 외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현장실습의 평가)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 정책 수립과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 결과를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15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현장실습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단위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공에 부합하는 산업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학부모 등의 참여) 교육감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졸업생 등이 현장실습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제5289호, 2021.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4

전라남도 교육청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지침

전라남도교육청

I. 총칙

1. **(성격)** 이 지침은 현장실습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현장실습 운영 지침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① 이 지침은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및 시행령, 교육과정 총론, 현장실습 제도개선방안('17.8.25., 12.1.) 및 안정적 정착 방안('18.2.23.), 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등에 의거하고,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이다.

② 이 지침에 제시된 기준 이외에 더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 및 제도개선방안에 의거하여 학교가 지역의 특수성과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편성하여시행한다.

2. **(적용대상)** 이 지침은 특수목적(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교육감이 정하는 학과)에 적용한다.

3. **(현장실습의 목적과 정의)** 현장실습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경험하고 적용함으로써 진로와 관련하여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다양한 직업 체험의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II. 현장실습 운영 계획

4. **(현장실습 운영 계획)** 학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① 학교는 현장실습이 학과별 교육과정과 인력양성유형에 연계되도록 하고,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방법 등을 포함하여 매년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학교 구성원·산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산업체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예산 검토, 현장실습 참여기업 발굴 및 관리 계획 등을 반영한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연간 현장실습 운영계획에 대한 교육청의 제출 안내가 있을 경우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①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구성은 교원, 학부모, 지역 산업계 및 취업 유관기관 관계자, 전담노무사를 포함한 6인~15인으로 한다. 이때, 교원위원은 현장실습업무 담당부장, 학과부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 현장실습운영위원회는 산업체 선정 심의, 실습시기 결정, 학생지도 및 안전점검 등 학교현장실습 계획과 운영 전반을 협의하고 결정한다. 이를 위해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두고 현장실습 업체 적격 심사, 학생별 현장실습 계획의 승인 등을 심의하도록 위임 규정을 둘 수 있다.

6. **(현장실습 예산 편성)** 학교는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실습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운영한다.

7. **(현장실습의 방법)** 현장실습은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3학년에 한함), 교내 활동 프로그램으로 대체 운영할 수 있다.

8.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는 학교와 학생의 특성,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현장실습이 학생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전 학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① 현장실습은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수업방법의 일환으로 교육과정과 관련된 직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도록 한다.
- ② 현장실습 이수단위(시간)은 학교의 장이 학교 구성원 등과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③ 현장실습을 특정 학기에 집중하여 실시할 경우, 보통교과는 편성하지 않을 수 있고, 보통교과가 편성된 상황에서 현장실습을 운영할 경우 해당교과에 대한 이수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전문교과Ⅱ의 이수는 현장실습이수로 대체할 수 있다.

Ⅲ. 현장실습의 운영

9.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실시) 학교는 산업체를 기반으로 현장실습을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학생이 이수하는 전문교과Ⅱ와 연계하여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10. (현장실습의 운영 시기) 현장실습은 학교의 특성과 실정, 학생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항에 따라 운영 시기를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다양하게 운영한다.

- ① 교내 활동 및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포함하여 수시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
- ②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의 경우는 3학년에 수업일수 1/3 범위(3개월) 내에서 연중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중기 취업맞춤반 등 정부주도형 산학연계 사업, 기업맞춤 JOBS교육,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경우, 공공기관 등이 자체 운영 기준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경우, 한독상공회의소가 인정하는 아우스빌등 참여기업, 관계법령에 따라 자

격증 취득요건 고려 분야(해기사 및 간호조무사, 말 조련(사육)사 등)는 3개월의 예외 인정되며 해당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따른다.

11. (현장실습 참여(선도)기업의 선정) 학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현장실습운영과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하면서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가능한 건실한 기업체를 발굴·선정한다.

① 학교는 산업체 현장실습생의 실무능력 및 현장적응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격조건을 갖춘 현장실습업체를 발굴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운영한다.

② 학교는 새로 발굴한 산업체의 산재가입 증명원을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이파이브 탑재)후 산업체가 ‘현장실습 제한 기준’에 해당되는지 적정 여부를 점검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현장실습 적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관계부처와 기관 및 교육청 등이 제공하는 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고, 학생의 전공적합도 및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산업체에서 실시할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여건, 산업체의 역량, 기존 실습생의 평가(또는 만족도)결과 등 참여기업기준을 판단하여 현장실습 기업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인력양성사업 참여학생, 전공동아리 활동의 지속적 참여 및 방과후 수업 등 교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유사한 직무 준비도를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학교현장실습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전공적합도 및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의 여부를 인정할 수 있다.

⑤ 학교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종료 후 학교(3학년) 수업일수 2/3 이상 출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조기 취업이 가능한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선도기업은 현장실습 지도담당자 자격, 기업의 4대 보험 가입 여부, 상시근로자 수(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 기업의 복리 후생, 기업CEO의 의지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⑥ 교육청은 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고용센터, 지방중기청 등 유관기관을 포함하여 구성한 협의체를 통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도기업을 인정한다.

12. **(학습중심 현장실습 프로그램 개발)** 학교는 실습기업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실습목표 및 실습생의 직무수행내용(또는 과업)을 구체화하고, 이를 토대로 전문교과Ⅱ과목을 활용한 산업체별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은 되도록 현장실습 분야에 해당하는 전공교사가 담당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업과 협의하여 개별 기업에 특화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13. **(현장실습 협약)** 학교는 관련 법령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①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의 경우에 학교장, 학생 및 산업체의 장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 실시 7일전까지 3자간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기업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제9조(현장실습계약 등), 제9조의2(현장실습시간), 제9조의4(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제26조(벌칙), 제27조(과태료)] 및 표준협약서[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등 법적 고려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기업에 현장실습생을 지도하는 현장실습 담당자를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 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따라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현장실습생을 산업안전보건 위해요소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학교는 학생과 학생보호자에게 실습 기업과 실습 내용 및 실습 수당 등 현장실습의 주요내용 안내 후 동의서를 작성한다.

- ⑤ 학교는 학생이 현장실습 기간에 현장실습 일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IV. 현장실습 학생 지도 및 감독

14. **(현장실습생 지도)** 교육청은 학교에 현장실습 관련 행·재정 사항을 지원하고 학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노동인권보호, 기업의 학습 중심현장실습 운영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현장실습 관리시스템(하이파이브)에 탑재하여야 한다.

① **(사전 교육)** 학교는 학생의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노동관계법(노동인권)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직업윤리교육, 실습생의 책임·의무·권리 등에 대한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수업 등을 통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순회 지도)**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관리 상황, 실습상황, 학생 건강, 현장실습협약의 준수 등 제반사항에 대해 실습생 및 담당자와 상담하여 필요한 지원을한다. 현장실습 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방문순회지도는 1회 이상 전체 실습생 및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유·무선 전화 및 SNS)을 통한 순회지도는 학교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한다.

③ **(지도 결과)**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현장실습계획이나 현장실습협약과 다른 내용이발견되는 경우 산업체와 재협의하여 시정을 요청하고 현장실습 내용 변경시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정상적인 실습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습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학생 보호)** 교원은 현장실습 산업체가 학생의 산업안전보건 교육과 산업재해예방 및 처리가 미흡하거나, 협약 위반과 부당한 대우 등이 발생하였다 고 판단될경우 취업지원센터 등 전문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아 학생상담 지원, 관련법에 따른 조치 등을 통해 참여 학생을 보호하여야 한다.

⑤ **(안전사고 조치)**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치료 조치 후 학생은 실습장의 책임자, 학생보호자와 학교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보고를 받은 관계자는 실습학생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한다. 실습장 책임자 또는 학교는 안전사고 발생 현황, 처리방법, 사후 처리 및 후속지원 방법을 포함하여 교육청 업무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선 구두보고 후 서면보고를 실시하고지속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15.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교육청은 지방고용관서 등과 협력하여 학교별 현장실습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중심 현장실습표준협약 준수 여부 등을 실태점검 및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될 수 있도록 활용한다.

16. **(복교학생 지원)**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 중 학교로 복교 의사가 있는학생은 그 사유에 대해 충분한 상담 등을 실시하여 복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학교는 사유에 따라 복교 학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한다.

V. 현장실습의 평가

17. **(평가)** 학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학생과 학교의 현장실습 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① **(학생 평가)** 학교는 우수교육기관 연계교육형, 산업체 체험형 또는 산업체채용약정형 현장실습 활동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고, 단위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②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생의 평가)** 참여학생의 현장실습 출석, 태도, 일지 작성, 등을 활용하여 학교와 산업체가 공동으로 평가한 내용을 현장실습 평가에 반영한다.

③ **(학교 자체 평가)** 학교는 참여기업, 실습 프로그램 등에 대한 학생 만족

도조사를 해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차년도 학교별 현장실습 운영 계획 수립에 영하고, 현장실습 결과 평가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④ **(교육청의 결과 보고)** 교육청은 학교가 제출하는 현장실습 운영 계획서와 현장실습 운영 현황을 토대로 현장실습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메모>

<메모>

<메모>

전남 직업계고 현장실습 문제점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발 행 인 : 문길주

발 행 처 : 전남노동권익센터

주 소 :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송산2길 89, 부기빌딩 4층
전화 061) 723-3860~1 팩스 061) 753-3862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전화 061) 287-3860~1 팩스 061) 287-3862

(홈페이지) <http://www.jecec.kr/>

발 행 일 : 2021년 11월 23일
